#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77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이재관·김종민·박희승

박수현 • 이언주 • 문진석

이광희 • 이병진 • 정진욱

송재봉 · 오세희 · 강준현

양부남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은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환경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질오염의 개선이나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 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 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③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7조제5항 또는 제6항" 으로 한다.

제87조제4항제1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			
	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			
	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u> &lt;신 설&gt;</u>	④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			
	역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			
	관은 수도사업자,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			
	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③</u> ~ <u>⑤</u> (생 략)	<u>⑤</u> ~ <u>⑦</u>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u>⑥</u>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의 규	<u>⑧</u> <u>제6항</u>			
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먹	당하는	자는	- 2Կ	į	0]
하의 징역	또는	2천 및	<u></u> 원	(ه	하
의 벌금에	처한디	<b>-</b> .			

1. <u>제7조제3항 또는 제4항</u>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 11. (생략)

- 제8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 9. (생략)
  - ⑤ (생 략)

제83조(벌칙)
1. <u>제7조제5항 또는 제6항</u>
1의2. ~ 11. (현행과 같음)
제8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1. <u>제7조제6항</u>
2. ~ 9.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